

# 문화본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

## □ 관련 근거
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55조의2 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

## □ 공포 조례 예산반영 현황 (2023년 5월~2024년 4월)

연번	공포일	구분	조례명	제·개정 주요내용	예산반영 현황
1	'24.3.26.	제정	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인문학 및 정신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, 사업 추진, 인문 교육의 실시, 지원 및 위탁,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'24년 2,223백만원</li> <li>▶ '25년 2,502백만원(편성요구)</li> <li>※ 세부사업 :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서울문학진흥 활성화' (문화예술과)</li> <li>- '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'(서울도서관)</li> <li>- '시사편찬', '서울역사의 대중화', '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교육', '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' (이상 서울역사편찬원)</li> <li>- '박물관 교육운영' (한성백제박물관)</li> <li>- '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'(서울공예박물관),</li> </ul> </li> </ul>

연번	공 포 일	구 분	조 례 명	제·개정 주요내용	예산반영 현황
2	'23.10.4.	제정	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	▶ 전통사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,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관련 사항 명시	▶ '24년 4,538백만원 - 국비 3,025백만원 포함 ▶ '25년 3,781백만원(편성요구) - 국비 2,521백만원 포함 ※ (세부사업) '전통사찰 보수 정비', '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', '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' (이상 3건, 문체부 보조사업)
3	'24.3.26.	제정	서울특별시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	▶ 성균관, 향교,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비 지원, 협의체 구성 근거 등 마련	▶ '24년 80백만원 - 국비 46백만원 포함 ▶ '25년 63백만원(편성요구) - 국비 36백만원 포함 ※ ('24년 세부사업) '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조성 프로그램(국가유산청 보조사업) ※ ('25년 세부사업) '향교서원 국가 유산활용'(국가유산청 보조사업)
4	'23.12.29.	제정	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	▶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침해 예방,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 장려	▶ '24년 100백만원 ▶ '25년 미편성 ※ ('24년 세부사업) '서울문화재단 출연금'
5	'23.5.22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 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	▶ 조례 제10조 (대관료의 감면 등) 서울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대관 건에 대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가능 규정 신설	▶ 해당사항 없음
6	'23.5.22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	▶ 조례 제15조(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) 市 문화도시 기본조례라는 조례명에 맞게 기존 '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' '문화도시위원회'로 명칭 변경	▶ 해당사항 없음

연번	공 포 일	구 분	조 례 명	제·개정 주요내용	예산반영 현황
7	'23.7.18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조례 제6조의2 (대관심의회)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규칙이 아니라 출연기관 자체 규정이나 내규로 정하도록 개정</li> </ul>	▶ 해당사항 없음
8	'23.7.18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조례 제10조(사무의 위탁) 문학 진흥 및 교육 등 문학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</li> </ul>	▶ 해당사항 없음

연번	공 포 일	구 분	조 례 명	제·개정 주요내용	예산반영 현황
9	'23.10.4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	▶ 조례 제5조 (전통문화 보존·관리·육성 및 지원대상) 「전통시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('23.10.4.)에 따라 동 조례에 명시된 전통시찰 정의, 지원, 위원 등 중복 내용 삭제	▶ 해당사항 없음
10	'23.10.4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	▶ 조례 제5조의2 (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)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우선 구매조항 신설	▶ 해당사항 없음
11	'23.10.4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	▶ 조례 제19조 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임의적 규제조항(조례 제19조제5항) 삭제	▶ 해당사항 없음
12	'23.10.4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	▶ 조례 제16조 (서울 미래유산의 취소) 미래유산 선정 취소 근거를 구체화	▶ 해당사항 없음
13	'23.10.4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	▶ 조례 제28조의2 (위원의 제척·기파·회피) 소장작품 구입 시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제척·기파·회피 조항 신설하여 공정성 제고	▶ 해당사항 없음
	'23.12.29.	일부 개정		▶ 조례 제36조 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 사업 효과성이 저조한 시민큐레이터 운영사업('23년부터 미추진)을 지원범위에서 삭제	
	'24.3.26.	일부 개정		▶ 조례 제9조(무료관람) 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 대상자를 추가	

연번	공 포 일	구 분	조 례 명	제·개정 주요내용	예산반영 현황
14	'23.12.29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▶ 조례 제16조 제2항 (축제의 지원·육성) 시 지원을 받는 축제 대상 판매상품의 공정 가격 준수 의무 부여	▶ 해당사항 없음
15	'23.12.29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▶ 조례 제3조(업무) 재단업무인 '시민의 문화 향수를 위한 사업'의 대상으로 '청소년, 청년, 미혼남녀, 장애인, 노인 등' 사업대상을 구체화	▶ 해당사항 없음 ※ 기존 문화사업과 연계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임
16	'23.12.29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	▶ 조례 제3조의2 (자료 구입의 제한) 및 제4조의2 (자료 기증의 제한) 자료 구입 및 기증자료 수증에 있어 필요한 제한사항을 명시	▶ 해당사항 없음
17	'23.12.29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	▶ 조례 제5조의2(자료제출) 경비 지원을 받은 박물관 미술관 대상 자료 제출 의무사항 신설	▶ 해당사항 없음
18	'24.3.26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	▶ 조례 제5조 (관람료의 면제)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 대상자를 추가	▶ 해당사항 없음
19	'24.3.26.	일부 개정	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	▶ 조례 제37조의2 (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진흥)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'독서 소외인'을 지식 정보 취약계층으로 추가	▶ 해당사항 없음